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6.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 증진과 표준 및 적합성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의 작업을 기반으로 한 무역의 증대 및 원활화
- 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
- 다. 가능한 경우, 양 당사국 간 무역과 관련한 비용 절감
- 라.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 협력의 촉진, 그리고
- 마.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제6.2조 정의

1. 이 장의 목적상,

지정은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점검, 지정 정지 또는 취소, 또는 정지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적합성 평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기관에 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1에 규정된 정의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6.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제13장(정부조달)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이 자신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규격을 적용하는 한도에서 그 기술규격, 또는
- 나.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제6.4조 권리 및 의무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그 협정의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6.5조 국제표준

-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한도에서,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
-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와 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G/TBT/1/Rev11의 제1부에 대한 부속서 2)과 그 이후 개정판에 규정된 원칙에 그 판정의 근거를 둔다.
- 3. 양 당사국은 국제표준화 기구 내에서 개발된 국제표준이 무역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국제표준화 기구에의 참여의 맥락에서, 상호 관심 분야에서 각각 자국의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한다.

제6.6조 기술규정의 동등성

-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게,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에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한다.

3.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약정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4.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그러한 약정 교섭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한다.

5.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 기술 규정의 동등성 및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상호의 사소통 및 조정을 강화한다.

제6.7조 적합성 평가절차

1. 각 당사국은, 적합성에 대한 명확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되는 절차는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5.1조에서 규정된 대로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 또는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위한 접근을 보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서로의 영역의 인정기관 간 협력 약정의 인정을 촉진

나.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서 서로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의 이행

다. 인정기관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 기존의 지역적, 국제적 그리고 다자간 인정 협정과 약정을 인정

라.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에 대한 인정

마.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에 대한 인정

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일방적 인정, 그리고

사.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용

3.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용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환을 강화한다.

4.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한다.

5. 양 당사국은 서로의 적합성평가 결과의 지속적인 신뢰성에 대한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 또는 인정된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적 능력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6. 제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 교섭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7. 당사국이 제6항에 따른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6.8조 공동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나. 건강, 안전 및 환경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양 당사국의 규제 기관 간 협력 증진, 그리고

다. 각 당사국 시장에 대한 접근 촉진

2. 우수 규제 관행과 무역 촉진 사이의 중요한 관련성에 대하여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규제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위험관리 원칙에 기초한 우수 규제 관행의 증진

나. 양 당사국의 기술 규정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 교환

- 다.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의 관리 및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를 위한 공동 계획 개발
 - 라. 더 나은 규제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이해 및 역량 구축, 그리고
 - 마. 적절한 경우, 시장감시 정보의 교환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한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무역원활화 계획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적절한 경우,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투명성
 - 나. 국제표준과의 정합
 - 다. 기술규정의 조화 또는 동등성
 -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 그리고
 - 마. 준수 사안에 대하여 도달한 이해
4. 제3항에 언급된 계획은 적절한 경우 비대칭적 접근방법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다.
5.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고려한다.
6. 양 당사국은 제6.10조제2항차호에 따라 설치된 작업반에 의하여, 개별 사안 별로, 작업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제1항부터 제5항을 이행한다.

제6.9조 투명성

1.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된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9조, 제2.10조, 제5.6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공고를 공표하거나 통보를 전달하는 한쪽 당사국은 그 제안의 목적과 취지 및 그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킨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게 그 제안을 통보할 때, 이와 동시에,

가. 한국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뉴질랜드 문의처에 전자적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나. 뉴질랜드는 제1항에 언급된 통보를 제6.10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의 접촉선에 전자적으로 전달한다.

3.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9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통보를 전달한 후,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4. 상품이 제6.12조가 적용되는 부속서 또는 이행 약정의 적용대상이 되고 한쪽 당사국이 그 상품이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긴급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제6.10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접촉선을 통하여 그 조치와 그 조치를 부과한 이유를 즉시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5.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 하겠다고 제안하는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6.10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직접 대면, 원격 회의, 화상 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의 촉진 및 점검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 증진

다.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보장

라.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영역에 소재한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 기관 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규제 당국, 인정 기관 또는 적합성 평가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모든 제안의 검토

- 마.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분야에서, 협정 교섭을 위한 요청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
- 바. 표준, 기술 규정, 그리고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 교환
- 사.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신속히 촉진
- 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고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원활화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고려하여 취하는 그 밖의 조치
- 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그러한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 개발, 그리고
- 차. 이 장에 따른 특정 과제를 수행할 작업반 설치

3. 양 당사국은 제2항사호에 따른 기술적 논의의 대상이 되는 기술 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들이 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4.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때에 회합한다.

5. 위원회는 다음의 접촉선이 조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경우, 기업 혁신 및 고용부 또는 그 승계기관

6. 접촉선은 자신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절한 모든 합의된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다.

7. 양 당사국은 접촉선의 변경이나 관련 공무원의 세부 사항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

8. 접촉선은 이 장의 이행과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6.11조 정보교환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된 형식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제6.12조 부속서와 이행 약정

1.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에 적용가능한 기술 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합의된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는 부속서를 체결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위원회를 통해 다음을 규정하는 이행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가. 이 장의 부속서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 그리고
 - 나. 제6.8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작업 프로그램 결과에 따른 약정
3. 부속서 및 이행 약정을 개발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하여 기존의 모든 양자적, 지역적 및 다자적 약정을 고려한다.
4. 이행 약정이 체결되었을 경우, 이는 양 당사국간 무역에 적용된다.
5. 양 당사국은 부속서 및 이행 약정의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합의한다.
6.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 인정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인정 협정 또는 약정 개발의 실행 가능성을 논의한다.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어떠한 제안에 대하여도 적절히 고려한다.¹

¹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관심분야는 통신장비, 전기 및 전자장비, 전자파적합성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의 관심분야는 주류를 포함한다.